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7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6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시 공무원을 포함함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.

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</u></p> <p>2의2. <u>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 사회환경교육 실시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<u>시,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및 출자출연기관, 기업 및 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 활성화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<u>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</u></p> <p>3. ~ 6. (생   략)</p>	<p>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시, 시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 교육 활성화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